

제35차 정기총회(서면회의) 공고

대구대학교 노동조합규약 제14조(소집) 및 제15조(의결사항), 제16조(소집공고)에 의거 제 35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
본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한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대의원회 심의 및 결의 (2022. 8. 23.)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, 한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의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**서면회의**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1. 일시: 2022. 8. 30.(화) 09:00~17:00[1일]
2. 대상: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
3. 결의 방법: 8월 29일 조합원 포털메일로 발송될 「총회 자료집(안건 제안설명)」 심의 후, 「서면결의서」에 각 안건별로 의결 및 서명 후 제출
4. 서면결의서 제출방법: 아래 가 또는 나 방법으로 제출
 - 가. 부(팀)별 수합(혹은 개별) 노조사무실 직접 제출(대구캠퍼스 교내우편 제출)
 - 나. 스캔본 제출 가능(수신자: 이철환 위원장)
5. 서면결의 취합 및 결과 공고: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 공고
6. 안건
 - 가. 1호 안건: 제18대 노동조합 1차년도 결산 보고
 - 나. 2호 안건: 제18대 노동조합 2차년도 사업계획(안)
 - 다. 3호 안건: 제18대 노동조합 2차년도 예산(안)

2022. 8. 24.

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(직인 생략)

◇ 서면회의 추진 배경 ◇

- 본 노조의 규약상 정기총회는 연간 1회, 8월 중 개최를 명시하고 있으나, 개강 직전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및 학기 업무 집중 준비 등을 고려.
- 각 법정단체들이 정부 및 상급단체의 한시적 허용 권고로 법률적 중요·필수 사항을 제외한 안건을 서면회의 개최 의결 시행.

※ 참고: 법률적 대면 직접 의결 사항

- ▷ 본 노조 규약상 중요·특별·핵심 사항: ① 제28조(특별결의) 규약 재·개정, 임원 징계·해임, 긴급동의 성립, 목적적립금 사용 ② 제46조(쟁의행위) 쟁의결의 ③ 제56조(해산사유) 분할 및 병합, 청산
- ▷ 노조법상 필수 사항: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, 조직형태의 변경, 조직의 합병·분할·해산, 쟁의행위 결의